

# 가축 사육업 등록 및 허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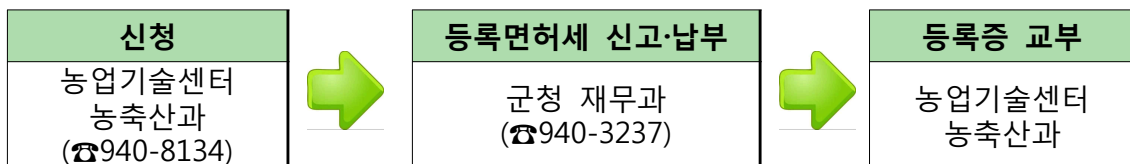
2015. 1. 1.부터 신규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.

▣ 『지방세법시행령』개정으로 2015. 1. 1.부터 『축산법』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이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.

▣ 등록면허세(면허)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 할 경우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이 유효할 경우, 정기분 등록면허세도 부과 됩니다.

▣ 2015. 1. 1.현재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된 자는 등록면허세(면허) 납부 대상이 되며, 가축사육업 폐업 시, 농업기술센터에 폐업 신고를 꼭 하셔야 등록면허세가 고지되지 않습니다.

## ▣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 절차



## ▣ 등록면허세 세액

면허종	면 허 명	세액(원)
1종	가축사육업의 허가(사육시설 면적 10,000㎡이상)	27,000
2종	가축사육업의 허가(사육시설 면적 5,000㎡이상~10,000㎡미만)	18,000
3종	가축사육업의 허가(사육시설 면적 1,000㎡이상~5,000㎡미만)	12,000
4종	가축사육업의 허가(사육시설 면적 1,000㎡미만)	9,000
5종	가축사육업의 등록	4,500